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웅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0026
----------	-------

발의연월일 : 2017. 11. 7.

발 의 자 : 노웅래 · 정성호 · 김병욱
장정숙 · 전재수 · 안민석
표창원 · 김민기 · 송기현
유은혜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책 환경 및 기후변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 정책 분야의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인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개발,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연구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수익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정책 분야의 보존·관리·활용사업 등에 대한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재 정책의 전문적·체계적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1.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개발
2. 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재정책의 연구·개발
3. 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4. 문화재 관계법령 및 문화재 행정의 개선·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5.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연구
6. 국내외 문화재제도의 비교·연구
7.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홍보 및 교육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 ③ 연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 ④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⑤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⑥ 국가는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하 이 조에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라고 한다)이 그 지위의 승계에 관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고 설립등기를 한 경우에는 제9조의2에 따라 설립된 연구원으로 본다. 이 경우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②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명칭은 연구원의 명의로 본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 행한 행위는 연구원이 행한 행위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연구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④ 이 법 시행 당시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임직원은 연구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재단법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정관에 따른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9조의2(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 ① 문화재 정책의 전문적·체계적 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산하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u> <u>1.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개발</u> <u>2. 문화재의 안전관리를 위한 방재정책의 연구·개발</u> <u>3. 문화유산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u> <u>4. 문화재 관계법령 및 문화재 행정의 개선·발전방안에 관한 연구</u> <u>5.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 연구</u> <u>6. 국내외 문화재제도의 비교·연구</u> <u>7. 조사·연구 결과의 출판·홍보 및 교육</u>

8.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9. 그 밖에 연구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문화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② 연구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연구원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국가는 연구원의 시설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연구원에 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⑥ 국가는 연구원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연구원에 무상으로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⑦ 이 법에 따른 연구원이 아닌 자는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